2021
12

council.chungnam.go.kr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 · 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의정정보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 도민이 더행복한 행복의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1-12호

12

Contents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07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09 전라북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13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5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33 충남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가락시장 내 '충남공익형시장도매인' 개설 필요성 의정토론회

44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54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65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밑그림'완성'

67 전라북도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내년부터 전북서 운영

최근 제 · 개정 법령

71 산지관리법 시행령

7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77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질의

80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제8조 관련질의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1-12호
01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1.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1. 02.] [경기도조례 제7229호, 2021. 11. 2.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외교" 란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유형) 경기도 공공외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공외교 : 도의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도를 널리 알리고 호감도를 높이며 타국 국민들과의 역사·문화교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것

2. 지식공공외교 : 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을 위해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교육기관 간 교육 및 학술 협력 지원 등을 하는 것

3. 정책공공외교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 언론 등 외국의 여론주도층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도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를 높이는 것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경기도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 공공외교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공공외교에 관한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및 민간부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정부가 공공외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공공외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중앙·지역 공공외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제1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외교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경기도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공외교 업무를 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에 기여한 공이 있는 도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전라북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2. 1. 10.] [전라북도조례 제5028호, 2021. 12. 10.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패” 란 그 재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상자의 업적이나 공적 등을 기리는 모든 제작물을 총칭한다.
2. “친환경 상패” 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으로 만든 상패 또는「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말한다.
3. “재사용” 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전라북도(이하 “도” 라 한다) 및 도내 시 · 군

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다. 「전라북도 출자 · 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 · 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도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패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주민은 친환경 상패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2. 친환경 상패의 생산 · 홍보 · 유통 · 판매 지원
3. 친환경 상패의 품질향상 지원
4. 그 밖에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 · 재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1-12호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

1.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12. 14.]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294호, 2021. 12. 14.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 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의 반장은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등

제6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일반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

[시행 2021. 12. 17.]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571호, 2021. 12. 17.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산업재해 및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착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란”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을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산업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란”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화재대피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구조훈련”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 따른 긴급구조훈련을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활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산업용 및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방독마스크 착용현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서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

6. 다중이용시설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 마스크 착용 장소에서 긴급구조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① 구청장은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업용 산소공급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 · 홍보 및 실천 · 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 착용의 실천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업현장 및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를 구입 및 착용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1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736호, 2021. 12. 17.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가공식품" 이란 남원시 관내(이하 "시 관내" 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②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 란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③ "사용권" 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④ "사용자" 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사용상품" 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⑥ "관리권" 이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별표 1의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 남원시(이하 '시' 라 한다)는 효율적인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는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권, 사용자, 사용상품 및 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일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 원예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남원시의회의원, 대학 교수, 농식품 관련 기관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유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제언
3. 그 밖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와 관련된 시간 · 장소 · 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내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의안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심의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공동상표 담당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사용신청 ·사용승인 및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가공식품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 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내에 정한 사용상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신청) ①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3조(상표 사용심사 및 승인)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용이 부적합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기간)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3년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의 책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대상품목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이 변질 ·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교환 ·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위원회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상품 또는 사용자가 온 · 오프라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17조에 의해 상표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제작 · 유인된 상표는 폐기 ·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는 가공식품 공동상표 홍보활동 및 사용상품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용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민법」,「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남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가락시장 내 '충남공익형시장도매인'개설 필요성 의정토론회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1. 11. 02.(화), 14:00~16:00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Ⅰ 총 평

-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넘어 장애인이 성장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음.
-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아닌 사회 참여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회는 장애인 일자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목적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참여가 필수요건이므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장애인선수 일자리 창출을 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음.

Ⅱ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① 서정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장)

❍ 2020년 공무원 부문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이 이루어짐.
-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민간보다 높게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21년 기준 민간 3.1%, 공공 3.4%).

❍ 의무고용제 강화 노력에 따라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0년 3.08%(중증 2배수제 적용)로 크게 증가

❍ 직접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대기업이 간접적 장애인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나서고 있음.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등장
- 2002년 도입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신규고용을 조건으로 기업이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발

❍ 컨소시엄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시 고려사항
- 중소기업 선정에 있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이 있으며 스포츠단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업 선발
- 규모가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특히 고용부담금 납부 업체 선정
- 투자시 유의사항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체육 시설 필요(시설 장비 등에 대해 무상지원금 활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1순위 고려 필요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 확보에 있어서는 근로장소, 근로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감독이 실체가 있어야 함.
- 관리체계 사전 준비(공단과의 협력, 장애인 근로관리 유경험자 배치)
- 수익창출은 고용장려금 외로 운영경비 재원 마련 계획 수립
- 참여기업의 지원계획(부담금 감면액중 일정 비율 지원) 수립
- 지역기업의 홍보 스폰서십 등 지원계획 마련 필요

2 지정토론(4인)

① 엄기영 (여주시 장애인지원팀장)

❍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필요

❍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근거 및 절차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 대상 등)

❍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주요성과

- 양질(최저임금 이상+안정적 고용)의 일자리 창출
- 저비용 고효율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여주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향상

❍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후 방향

- 안정적 직업과 주거지원으로 탈시설 성공모델 제시
- 영유아, 장애인, 치매노인 등 고용 확대에 대한 준비

② 노태현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장)

❍ 표준사업장 운영시 장·단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는 있으나,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우리 道가 장애인스포츠에 대해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道 위상 제고
- 중소기업중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아 고용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❶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명 이상 ❷최저임금(8,720원) 이상 지급 ❸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❹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충족 등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나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찾기 어려움.

❍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의무를 법률에 반영한 것

-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장애인표준사업장 형태의 장애인스포츠단에 출자하여 운영재원으로 활용
- 장애인선수 일자리 창출을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공감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참여가 필수요건이므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 설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우선, 도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기관 등에서 참여할 중소기업을 찾아 설득하는 것이 필요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전 절차 및 법률에 부합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준비

③ 변현수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의 필요성

- 2005년「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체육이 재활에서 체육의 영역으로 이관되면서, 장애인스포츠실업팀(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의 법적 기반 마련
- 2005년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감면과 장애인 선수 취업기회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기업고용을 통한 급여성 선수가 증가되고 있어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유행처럼 이 사업을 진행
- 새로운 기업고용 형태가 필요하고 그 대안이 장애인 스포츠 표준사업장(가칭)으로 전문적 지도와 훈련 프로그램, 선수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안정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 충청남도 장채인체육선수 고용 현황과 대안

- 모든 운동선수는 급여를 받으며 훈련하는 실업선수를 희망함
- 충청남도 장애인실업팀 창단하여 3개가 설립되었지만, 스포츠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아직도 턱없이 부족

③ 윤재준 (천안의료원 재무과장)

❍ 장애인 일자리 구조
- 중증 장애인의 60% 정도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음. 단순 직무, 어렵지 않은 직무 다수 채용하는 것이 현실임.
- 전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열악한 환경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지점임.

❍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채용
-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사무, 업무보조, 전화상담, 안내, 발열체크 등 비자격자 위주로 채용
- 장애인 채용은 전체 정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 충남 4개 의료원의 경우 1년 평균 약 41백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위한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향
- 대부분의 의료원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청소용역)과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고자 노력
- 장애인의 고용안정, 최저임금 보장, 근무환경, 장애인의 고령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
-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지만 도에서 고용한 형태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안정된 일자리 보장
-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양질의 일자리 모델 제공

3 종합토론

❍ 현재 보치아 선수들이 8시간 근무하고 있음. 장애인의 경우도 8시간 근무가 힘들다는 것은 편견임. 충남도가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스로 살아가는 자립의 의미로 접근하여 임금을 시급 수준이 아닌 월급에 최저임금을 맞춰야 함.**[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대부분 제조분야에서 정신, 발달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음. 스포츠단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그 자체로 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면 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정연 부장]**

❍ 충남도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근거가 확실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세목만 변경하여 출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 표준사업장을 스포츠연계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반다비 체육관을 통해 은퇴선수에게 창업, 취업 공간 지원해 주고 인식개선 측면에서 장애인선수를 전담, 반전담 강사로 채용하여 활동수익을 내는 사업 구상 필요**[대한장애인체육회 이현석 차장]**

❍ 컨소시엄형 장애인스포츠단이 설립되면 15개 시・군에 스포츠단 지부를 만들어 육성하고 선수를 활용하여 비장애인체육회처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직접 또는 보조강사 형태의 운영방식 추진 필요**[서천군장애인체육회 이광재 사무국장]**

❍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장애인체육회뿐만이 아닌 도 차원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홍성군장애인체육회 박종도 사무국장]**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소기업을 찾는 것임.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애인의 고용을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기업과도 연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함. 위험부담이 없는 대기업까지 열어줘야 함.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최재섭 부장]

4 마무리 발언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형태는 대부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순으로 분야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임. 따라서 장애인 고용분야 확장을 위해 문화·예술·체육 등 표준사업장 유형을 개발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선수를 고용할 수 있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필요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충남도만의 새로운 모델로 장애인스포츠단 설립 형태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을 만들어야 함.
- 본 토론회를 계기로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고 장애인분들이 차별받지 않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준 높은 충남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함.

Ⅲ 토론회 과제 및 결과

〈과 제〉

1.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소기업 발굴이며 튼튼한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
2. 중소기업 선정에 있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책 마련 시급
3. 스포츠단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업 발굴 필요
4. 장애인의 고용안정, 최저임금 보장, 근무환경, 장애인의 고령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필요
5. 전문적 지도와 훈련 프로그램, 선수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안정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

〈결 과〉

1. 중소기업 참여가 필수요건이므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2. 장애인선수 일자리 창출을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 확인
3.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장애인체육회와 도 차원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4. 중소기업 모집을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도출
5. 장애인의 고용을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도 연대할 수 있도록 기준 확대 제안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의정토론회의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관리**

※ 의정토론회 신청 의원에게 추진상황 정례 보고

- 충청남도 체육진흥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충남장애인체육회

충남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가락시장 내 ‘충남공익형시장도매인’ 개설 필요성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1. 11. 12.(금), 14:00~16:00 / 부여문화원(소강당)>

Ⅰ 총 평

❖ 본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가락시장 내 ‘충남공익형시장도매인’ 개설을 통한 농산물의 효율적 유통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된 의정토론회로

❍ 안정적 생산 및 효율적 유통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공정한 유통 혁신을 통해 농민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 모색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논의하였으며,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안정 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

1 주제발표(2인)

① 현종기 (아이엔케이 대표)

◈ 충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 충청남도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과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농산물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닌 포괄적·거시적 관점에서 당면과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 공영도매시장 : 농산물 수집·분산 기능(역할 제한적) → 역할과 기능 확대 필요

-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위축 → 지방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관건임
- 지역농산물 순환체계 핵심 시설로 기능 재편 필요 : 제도 혁신 + 유통 범위 혁신 + 유통·물류 기능과 공간 활용 혁신 등

◈ 충남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제언(생산적 측면)

❍ 충청남도라는 큰 그림에서 권역별 농업·농촌 접근방식 이원화

- 북부권 :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의 감소(위축) → 동일한 농업예산 투자는 미래지향적 가치가 떨어짐
- 충남부권 : 인구소멸위기 지자체가 다수로 농업생산가능인구의 유입과 육성/성장을 중심으로 정책 사업이 요구됨

- 4차 산업기반의 대규모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육성에 적합함 (휴경지 또는 경작포기농지 등을 규모화한 농업생산기반 구축)

❍ 광역단위의 로커푸드(먹거리정책) 추진 필요함

- 상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북부권과 중남부권은 지역적 양극화, 인구편중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북부권 시민에게 안전먹거리 공급망을 충남부권에서 계획적으로 조 달할 수 있는 로컬푸드(먹거리) 공급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광역먹거리통합센터 및 지방 도매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중소농(영세농, 고령농, 여성농업인, 창업농 등)의 보호와 중소종이 성장할 수 있는 포괄적·통합적 지원정책 필요함 (지역산 농산물의 다품목 소량체계로 시군 단위로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성장의 한계성 있음)

② 안 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연구팀 부장)

❍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중요 경로

- 과거 유사시장 위탁상의 폐해를 시정하여 생산자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운영(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33개가 운영 중)

❍ 수도권 먹거리의 절반가량 공급하는 역할(가락시장)

- 우리나라 농산물(청과물) 생산량의 약 49%를 공영도매시장이 담당

-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34%를 취급하는 핵심적인 시장

❍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화

- 위탁상의 전횡 방지 등을 위해 1985년부터 가락시장 경매제 추진
  ※ 당시 위탁상을 원하는 중도매인의 반대에도 농식품부 및 서울시의 의지로 경매 추진

- 경매제 단점 보완 등을 위하여 정가수의매매(이하 수의매매)도입
  ※ 상장예외품목 지정 허용(1994년), 시장도매인(일명 '도매상'), 도매시장법인(일명 '경매회사')의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방법으로 허용(2012년)하는 농안법 개정

❍ **경매 거래(도매시장법인, 일명 '경매회사' 만 거래 가능)**

- 다수의 거래 참가자가 가격 경쟁을 통해 상품을 사고파는 거래 방법
  ※ 가격은 중도매인 등에 의해 결정되며, 출하자(생산자)는 거래 가격 결정에 참여 불가(2019년 기준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물량 중 77%가 경매거래)

❍ **수의 거래(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상장예외 허가 중도매인 거래 가능)**

- 경매절차 없이 거래 당사자 간 가격과 물량을 협상하여 결정

※ 도매시장 법인(4단계) : 경매사가 출하자(생산자 등)와 중도매인 간 가격・물량 중재

※ 시장도매인(3단계) : 시장도매인과 생산자 간 1:1거래, 3개 도매시장(서울 강서, 대구 북부, 안동) 운영 중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에 필요한 농식품부장관 승인 필요**

- 시장도매인제는 법령의 개정 없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도입 가능
- 서울특별시가 농식품부에 요청('15.5.29)한 업무규정 개정안 승인 필요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반대 입장에 대한 사실 관계**

- 첫 번째는 시장도매인제는 거래과정이 불투명하고 대금정산이 불안
- 두 번째는 시장도매인제는 독자적인 가격 형성을 할 수 없음
- 세 번째는 한 도매시장 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병행 운영 된다면 경매가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지정토론(5인)

① 임완상 (시장도매인발전협의회 회장)

❍ 현재 시장은 존폐위기를 맞고 있음. 직거래, 온라인 등 좋은 상품을 싸게 팔고 있어 시장도매인 많이 힘이 듬

❍ 가락시장에서 올라온 농산물은 대부분 경매제를 통해 거래됨. 매일 시장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음.

❍ 산지와 소비자간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경매제는 다른 선진국에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음. 경매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야 함

❍ 경매제를 통한 최대 수혜자는 도매시장법인, 가락도매시장 개설 이후 3개회사 청과(서울청과, 중앙청과, 대아청과) 35년째 독점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더 이상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산재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 강서시장 내부 도매시장법인(3개회사) 45,000평, 매출 4,000억원 시장상인 20,000평(60개 회사. 모두 대표), 매출 8,000억원, 매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제도는 시장도매인제 밖에 없음

②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광사 전문위원)

❍ 국내에서 생산된 전체 농산물의 59%가 33개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그 중 약 37%가 가락시장으로 홍수출하 되고 일부는 다시 지방도매시장으로 전송되고 있음

❍ 연간 약 230만톤(1일 약 7,500톤)의 농산물이 몰리는 가락시장 경매회사의 독점적 수탁권과 그날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제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함

❍ 농산물 가격 불안정은 농산물 수입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탄소발자국을 남기며 GMO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수입농산물로 생산자 소비자 너나없이 모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와 생산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재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건트롤타워가 필요함

❍ 충남 공익형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에 설립될 경우 판로에 대한 걱정은 없으며, 최근 농특위 주최 유통혁신관련 간담회에서 사) 한국마트협회에서는 공익적인 직거래도매상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음

❍ 충남 공익형시장도매인은 충남 농산물의 지역 내 생산-유통-수요

데이터, 지역 외 유통-수요 데이터 등을 통합하는 데이터플랫폼 역할을 하며 충남 농민들의 경영안정 및 농업기술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서울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서울시 공공먹거리 영역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것임

- 충남 지방도매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수산물을 싣고 내려가기 때문에 유통비용 절감과 더불어 충남도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주말에는 다양한 이벤트 및 농민장터를 개최하여 '굿뜨래' 와 같은 충남의 우수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아지게 됩니다. 충남으로 귀농귀촌하려는 도시민들의 현장탐방 장소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충남에 기부하는 도시민들에게 충남 농산물을 제공하는 '고향세' 홍보의 장이 될 수 있음

③ 노승호 (부여군 의원)

- 공영도매시장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도 인정하지만 독점적 수탁권의 부작용과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 등 생산자와 소비자들로 부터 변화와 개선의 요구가 거세다고 판단됨

- 도매시장법인들에게 광고비를 지원받는 일부 농업정보지와 우호적인 언론들은 시장도매인제에 대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농업인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처럼 기사화하고 시장이 혼란에 빠질 거라는 공포를 조장하며 반대여론을 만들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들의 지분구조와 수익구조를 보니 농업과 전혀 연관없는 건설사와 사모펀드자금들이 유입되어 막대한 수익을 배당받고 있어 이제라도 비정상적인 구조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고 주체들간의 견제와 선의의 경쟁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함

❍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품목별·주산지별·생산자 조직별 등 세분화하여 생산규모 출하시가 등 소통이 필요하며 소비패턴 분석과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을 계획하고 출하 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함

❍ 충남공익형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공익적 기능이라고 생각함. 많은 기능들을 하게 되겠지만 출하농민에 대한 환원대책 및 안전장치 구축이 대표적인 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중 국내 농산물 가격의 표준이 되고 기준점으로 크게 작용되고 있는 만큼 최저 가격보장에 대한 견제와 방어 기능이 중요함

④ 문춘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연구팀장)

❍ 도입의 필요성(공공재는 공익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현재 가락시장은 1조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공익형시장도매인은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가 공동출자하는 법인으로, 생산자들이 직접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이익은 출하 농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임

❍ ‘공익형시장도매인제’ 성공요인(위치, 참여자)

- 첫 번째는 어디 위치에 있느냐?

지자체 공익형시장도매인 설치 예정지를 중심으로 북쪽은 헬리오씨티 아파트로 약 9,500세대에 약 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동쪽에는 금호아파트에 약 900세대에 3천여명 그리고 남쪽에는 올림픽훼미리 아파트로 약 5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농수산물을 유통하기에 그 어느 곳보다 좋은 상권을 가지고 있음, 교통여건 또한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2개의 노선이 교차하고 송파 대로에는 강남과 강북, 분당을 잇는 약 50여개의 버스노선과 남북 양쪽으로 1.5km 이내에 북쪽으로는 롯데타워와 남쪽으로는 문정 법조타운이 있는 등 지리적으로 커다란 메리트가 있으며 현재 약 1조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어 진행되고 있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후에는 물류 여건도 크게 개선될 예정으로 앞으로 오랜기간 동안 가락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기지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예상됨

- 두 번째로, 이러한 지자체 공익형시장도매인제에 누가 참여하는가 하는 것임.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영업보다는 유통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공사 및 각 지자체의 운영전략임.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충청남도 자체 힘으로만 마케팅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강서 시장도매인도은 물론이고 가락시장에 활발히 영업하시는 1,000여명의 직판상인들과 전국마트 협회 회원들을 활용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음

❍ 기타(홍보관 활용 등)

- 현재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구상하는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 부지는 약 200평, 충청남도 입장에서 큰 예산의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시설이 완료될 경우 충청남도 농산물 홍보관으로도 충분한 효과 있음

⑤ 최권성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장)

■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정부입장(농식품부)

❍ 시장도매인제 도입요구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라남도

❍ 시장도매인제 : 기존 거래구조(경매→중도매인)와 '시장도매인' 을 함께 공존하여 도매시장 운영

※ 시장도매인 : 경매를 거치치 않고 직접 매입 및 분배

- 기존, 도매시장법인에 예속(거래, 자금)되던 중도매인과는 달리 산지 교섭력과 자금을 가지고 거래

❍ 농식품부 의견 : 불승인

- 이력 : 2015년 서울시요구(불승인), 2019년 박완주의원 국회발의(부결) 2020년 국정감사에서 쟁점화
- 의견 : 새로운 제도의 변화가 농업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양향분석과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관련 지자체 동향(전라남도)

❍ 전라남도에서 서울시와 ‘20.10월 MOR체결, ’21년.9월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

- 공동출자를 통해 40억원 자본금 조성・운영/2개도(660㎡) 개장 거래가격 협상, 매수 및 수탁판매, 가격안정자금 정립 및 집행
  ·품목별 계약재배를 통해 기준가격 결정·고시(도·농협·생산자 협의)
  ·위탁수수료 7% 중 4%를 가격안정 기금으로 적립·지원
- 기준가격 대비 판매가격 차액 발생시 70% 지급

■ 우리도 의견 및 향후계획

❍ 농식품부가 시장도매인제 승인시 ‘충남 공익형 도매인’ 참여 여부 검토 및 운영방침 마련 필요

- 참여시 재원 마련, 운영 주체 선정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

❍ 그동안 우리 도는 2013년 농식품유통과를 신설, 산지유통 업무에 주력해 산지의 역량을 높이고 통합마케팅을 확대해 옴

- 통합물류, 통합구매 정착, 2020년 기준 시군통합마케팅 3,479억원, 충남오감 1,539억원 매출

❍ 향후,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견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최선

① 산지 교섭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분산출하(대형유통업체 납품) 지원(대형유통업체 6개 업체 협약, 매년 5억원 판촉비용 지원)

② 우리도에서 추진하는 통합물류(2016년~)를 통해 온라인 도매시장(aT) 등 적극 지원

③ 산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선별출하조직 107개소, 통합마케팅조직 13개소 육성 지원(매년 30억원)

3 마지막 마무리 발언

❍ 부여농협 농산물유통을 5년 동안 담당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느꼈던 분야가 가락도매시장임. 광역먹거리센터가 부여에 유치가 되는데 광역먹거리센터 성공여부는 충남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수도권을 공약하지 않으면 광역먹거리센터 운영은 쉽지 않음. 광역먹거리센터와 연계해서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문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음.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목소리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각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음.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에서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토론 및 대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이번 의정토론회에 참석한 도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 발언 : 김기서 /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결론

< 과 제 >

1. 산지와 직거래 할 수 있는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 다자간 협력구조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직거래 및 계약재배를 늘릴 수 있는 공익형시장도매인을 도입해야 함
2.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는 최대한 물량이 모이는 가락시장부터 개선해야 함
3. 생산, 소비, 유통이 연계된 계약재배와 판로개척을 병행할 수 있는 유통정책과 생산단계의 계약재배가 실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외국과 같이 예약형 거래제도 도입이 필요함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 결 론 >

- ❍ 충남 공익형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에 설립될 경우 판로 걱정 없음. 건어물을 포함한 수산과 농산물 구색이 잘 갖춰져 있음
- ❍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서울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서울시 공공먹거리 영역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것임
- ❍ 4단계 유통구조인 경매제 외에 3단계 유통구조인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농식품부는 승인해야 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농식품유통과)
-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1. 11. 26. (월) 14:00~16:00 /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Ⅰ 총 평

❍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지역 농민·상인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찾기 위한 자리였음

❍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대책과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각 토론자 마다 생산·가공·소비 및 유통·제도개선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 '인삼약초산업의 위기의식' 속에 발제 및 토론자의 발표와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종료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게 마치면서 '소비자 수요 반영, 안전성 강화 및 홍보 등'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음

☞ **의정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검토를 통해 도정에 반영하여,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함**

Ⅱ 주요 토론 내용

1 주 제 발 표 (1인)

○ 김영수 원장(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금산 약초시장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ㅇ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생산 등 5개 부문)

- 생산부문에서는 생산이 증가하면, 인삼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5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음
- 가공부문에서는 영세업체 중심의 가공으로 품질 및 안전성이 취약, 품목별로는 음료가 전체 업체의 84%로 품목 편중이 심함
- 소비부문에서는 소비량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소비형태는 홍삼 가공제품 중심으로 캡슐 등 복용 편의상품을 선호함
- 유통부문에서는 미검사 인삼의 유통, 전통시장형 거래로 가격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 초래 등 부정적 측면이 존재함
- 수출부문에서는 수출 증가 폭이 미미하고 금산의 점유율은 14% 수준으로 다변화와 맞춤형 상품개발이 필요함
- 제도개선부문에서는「약사법」개정 건의 노력 등 정부정책 대응과 특화사업 발굴 등 체질 개선 필요함

ㅇ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 목표는 초고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인삼약초의 안전생산, 안전성과 다양성을 고루 갖춘 시장 선도형 제품 가공, 유통시장 신뢰확보와 수출 등 유통채널 확대하는 것임
- 추진방안으로는 유관기관・전문가・당사자가 참여하는 삼업혁신 위원회 구성, 생산・가공・유통 등 분야별 주체가 주도하는 논의 구조 운영, 분야별 과제도출 및 책임 추진체계 구축 필요
- 특히, 삼업(蔘業)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협의회와 4개의 추진단(생산・가공・유통・제도개선)을 통해 주・월・분기 단위로 추진상황과 추진과제를 점검

2 지 정 토 론 (6인)

① 문정우 군수(금산군) : 금산 인삼약초산업 기본 틀을 바꿔야

○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현실태

- 소비 감소, 가격하락, 재고량 증가 등 인삼산업 전반에 큰 어려움
- 코로나19 영향과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도 있음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경쟁력 확보

- 인삼약초산업 표준화 지원센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다양한 계층 공략을 위한 제품별·공정별 표준화와 지원시스템 강화

○ 인삼시장의 전근대적인 거래방식 개선 - 경매제 도입

- 후진적 거래방식 개선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신뢰확보와 상인 인식 개선 등 경매제 도입(장기 과제)

○ 수요와 공급간의 수급 균형 제도 마련 - 경작신고 의무화

- 생산측면에서 구조조정 필요, 생산량 예측 및 조절로 인삼시장 수급 안정화 필요 ⇨ 「인삼산업법」상 경작신고 의무화

☞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행정지원, 종사자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 필요

② 정낙춘 국장(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금산 인삼 유통 활성화

○ 금산인삼 위기 요인

- 집중호우, 급격한 기온 변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이 필요하고, 4~5년근 재배로 6년근 중심의 소비시장 경쟁력에 취약함
- 소비감소, 재고량 증가 우려로 계약재배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시장중심 대면판매에 의존하여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에 취약함
- 안전생산은 공감하나, 채굴전 검사 등 안전성 검사 미온적

○ 금산인삼 위기 대응 방안

- 소비트렌트에 맞는 재배·소비자 수요에 맞춘 6년근 재배 확대
- 현재 도·소매시장은 안전성 검사와 관계없이 전국 인삼 반입·판매함(실명표기 및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필요)
- '공익기능 도매센터' 설립으로 수삼시장 이전 등 신규 플랫폼 구축
- 금산 인삼시장 유통 총괄 전담조직 육성주체를 육성하여 대형마트 공급, 신시장 개척 등 유통채널 다양화 추진

☞ **인삼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재배·유통분야 변화와 민·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소통 필요**

③ 김현호 소장(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 금산 인삼 약초 가치 Upgrade를 위한 방안 및 R&D 추진방향

○ 국내 산업현황

- 소득향상과 웰빙 트렌드로 생산규모 증가 후 최근 정체상태이며,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임
- 기후변화, 초작지 부족, 경영비 증가 등 생산기반 위축으로 고품질 원료삼 안정생산에 한계가 있음
-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삼소비 감소 및 재고 누적과 수삼소비는 줄고 홍삼제품류 소비는 증가하고 있음

○ 시장전망

-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여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건강기능성 식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예측

○ 인삼 R&D방향(재배, 생산)

- 다수확, 내병성의 생산자 요구를 반영한 품종 육성 노력
- 인삼 정밀농업, 생리·생태 및 양분관리 연구로 생산 최적화 병행

○ 금산 인삼가치 Up Grade 방안제시

- GAP 인증제 확산, 안전경 검사 의무화 등 소비자 신뢰 확보
- 금산군 주도 국내 인삼소재 표준화를 위한 R&D 선행 필요

④ 강상묵 조합장(백제금산인삼농협) : 인삼 소비 촉진에 대한 제언

○ 학교급식 및 군납

- 중·고등학교 대상 학교급식 및 군부대 급식에 인삼을 활용한 음식과 제품을 제공으로 미래 소비자 발굴과 홍보 필요
- 정부 및 자방자치단체, 교육청, 농협 등이 협력사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 절실

○ 홍보 및 마케팅

- 인삼, 홍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오프라인 위주의 홍보·마케팅과 온라인 시장 개척 및 판매 활성화에 관심 요망
- 젊은 소비층의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과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선행 필요

☞ 인삼은 언제나 최고라는 자만심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변화를 찾아 '감동의 인삼'으로 거듭나야 함

⑤ 정승철 조합장(국제금산인삼시장조합) : 인삼약초시장 유통 안전성과 법률문제 등에 대한 고찰

○ 도매시장에서 인삼유통시 안전성 검사를 필한 후 판매해야 함

- 안전성 없이 유통되는 인삼은 미래가 없음. 안전성 검사를 당장 실시해야 함

○ 제조 인삼, 홍삼, 태극삼, 흑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

- 소분판매, 검사 및 인삼박스 디자인 지원, 계절별 성분 홍보 등

○ 「약사법」 및 「인삼산업법」 개정 노력 필요

- 인삼이 약으로 쓰여질 경우 출하조절이 가능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과잉생산에도 인삼값이 폭락하지 않음

○ 수삼(Water)이 아니라 생삼(Fresh)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함

⑥ 황광보 대표이사(우신산업주식회사) : 인삼산업 활성화 방안 – 수출 · 가공 · 제도개선 등

○ 가공 및 수출

- 인 · 홍삼의 명칭 사용시 최소한의 함양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요함
- 인삼의 기능성(뇌기능 항진 등 8개 효과)를 홍보 등 해외수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길’ 을 닦아야 함)

○ R&D 및 마케팅

- 인삼 고유의 쓴맛을 중화하고 의약품 · 식품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함
- 한류(오징어 게임에 달고나가 아닌 인삼제품이 나왔다면)를 통한 접근성 있는 홍보 필요

○ 제도개선

- 인삼을 수급조절 대상품목으로 편입해야 함
- 「인삼산업법」 제11조 중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 · 방출을 해야 한다’ 로 개정, 비축 · 수매 연근 지정 철폐
- 「약사법」 을 개정하여 「인삼산업법」 에 의한 검사를 「약사법」 에 의한 검사로 인정
- 농업관측 품목에 인삼을 편입하고, 열처리 원형삼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함

○ 그 밖에 인삼약초산업진흥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자유토론 (질의 · 답변)

① '경작신고 관련'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 의 《불교공뉴스 환경부 송인승 부장》

○ 현재 경작신고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경작신고를 하면 농민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답 변 《문정우 군수》

○ 경작신고 기피 이유는 자조금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 파악, 자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지 않다는 불신도 있음
○ 지원사업도 경작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

② '6년근 인삼 재배 확대'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의(1)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연구개발팀 표미경 팀장》

○ 6년근 인삼의 경우 기후적 · 가격적 측면에서 불리하고, 재고 부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1) 《정낙춘 국장》

○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에서 수요가 많은 6년근 재배를 제안한 것임
○ 4년근과 6년근의 차이점이 적음을 공영방송 등에 홍보가 필요함

질의(2) 《금산인삼협동조합 손원석 조합장》

○ 6년근의 경우 농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 또는 토질의 영향으로 6년근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재배되 쉽지 않음
○ 4~6년근이 성분차이가 없음을 도 차원에서 홍보(예산 반영 요망)

답변(2) 《정낙춘 국장》

○ 6년근을 100% 생산 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 6년근 생산 비율을 늘리자는 취지임
○ 4년근도 6년근 못지않은 성분이 있음을 언론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③ '금산 생산 인삼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 의 《금산인삼협동조합 손원석 조합장》

○ 판로가 없으면 유통에 의미가 없음
○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유통될 때 한 건의 택배비라도 지원을 건의함

답 변 《문정우 군수》

○ 인삼 축제가 취소되면서, 예산전용으로 세일행사 등 행사와 홍보를 강화했음(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임)
○ 도에서 금산군에 홍보예산 지원을 건의드림(CF외에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방송을 통한 홍보도 중요함)

④ '제도개선 등' 에 관한 의견

의 견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

○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많음.
○ 문제는「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인삼산업이 어려워졌음
○ 농산물에 대해 농림식품부에서 재정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음
○ 이를 위해 도에서 시작했으니까 군 차원에서 금산 인삼약초 산업을 살리기 이한 노력이 필요함

⑤ '인삼 수도 조례 제정'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 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 최대영 행정원》

○ 미국의 경우 인삼의 수도가 존재함
○ 금산을 '인삼의 수도' 라고 명명하는 조례 제정을 건의함

답 변 《김복만 의원》

○ 조례가 필요하면, 도의원들과 협의하여 제정을 검토하겠음

⑥ '채굴전 검사의 불합격 농가'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 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 최대영 행정원》

○ GAP를 하기 위해서는 채굴전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에 불합격한 인삼에 대한 대책과 보상방안은?

답변(1) 《김영수 원장》

○ 불합격이 나오면 채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불합격 인삼의 경우에는 재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할 때까지 경조조치를 해야 함

답변(2) 《문정우 군수》

○ 채굴전 잔류 농약검사 관련해서 인삼경작 예정지를 관리할 때 잔류농약검사를 전제로 지원함('농약 잔류시 경작을 하지 말라' 는 취지임)

○ PLS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용가능한 농약이 지정되어 있음 (지정 및 허가된 농약을 사용하면, 반감기가 존재하여 재검사시에도 불합격하지 않음)

⑦ '금산 생산 인삼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의견 및 답변

질 의 《LG생활건강 금산중앙지사 대표 송영천》

○ 홍보 측면에서 '면역력' 쪽에만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원기회복 및 기력' 에 포인트를 주어 마케팅 또는 홍보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음

답 변 《문정우 군수》

○ '원기획복·기력' 은 결국에는 '면역력' 이라고 생각함

○ 홍보는 짧은 시간에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적극 검토하겠음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결 론

- 행정기관·관계 전문가·인삼산업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삼업(蔘業)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
- 인삼 경매제 도입과 경작신고의 의무화
- 6년근 인삼의 재배 확대와 시장 이전 등 신규 플랫폼 구축, 민·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소통의 강화
- 신품종 육성과 금산군 주도의 국내 인삼 소재 표준화 진행
- 젊은 소비층을 공략한 학교급식·군납, 온라인 마케팅 확대
- 인삼 제품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모색(CF, 방송프로그램 등)
- 수급조절 대상품목·농업관측 품목 편입과 열처리 원형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성 과

-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삼의 안전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행정의 지원과 인삼산업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민·관의 화합과 협력의 중요성 인식
- '6년근 인삼 경작 확대'에 대한 오해 해소, 4~6년근 인삼의 성분함량 편견 해소에 관한 홍보 강화 필요성 인식

Ⅳ 후속 조치

- 의정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의견)이 행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가칭)「인삼약초의 수도 조례」제정 검토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1. 11. 26.(금), 14:30~17:00/ 홍성문화원 공연장(1층)>

Ⅰ 총 평

❖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내 도민, 전문가, 관련 학계,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홍성 원도심과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의원 신청으로 마련되었음.

○ 원도심이 신도심과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정주 환경 격차 해소,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협력기반 구축, 신도심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함.

○ 또한 주민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원도심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연계형 테마사업, 오감 만족 여행, 다크투어리즘 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마지막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원도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을 도 행정부·관계기관 등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주 환경 격차 해소

- 원도심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충진식 개발과 '2040 홍성군 기본계획' 에 따라 홍성의 순환도로망이 구축되는 만큼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필요함.
- 또한 수요가 많은 간선축에 급행 노선을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생활 서비스 및 직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주 인구 외 관광을 통한 체류 인구 확대 방안과 지방과 다양한 관계를 가진 관계인구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현재 충남혁신도시는 내년이면 인구가 10만 명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됨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정책 발표에 따라 혁신

도시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추진사업이 발생하는 만큼 원도심은 혁신도시와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충남혁신도시 투자 선도지구와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고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기업입지 여건을 개선해야 함.
-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충청남도 주도로 이전기관, 지역대학, 기업 등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 정보공유와 교류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연계교통망 확충**

- 크게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계획에 포함된 충남철도사업(홍성역~공주 KTX역~서대전역 70㎞, 1조 5,680억 원)의 추진으로 교통망을 확충함.
- 작게는 홍성읍과 충남혁신도시 간 간선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홍성읍 자전거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순환 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 협력기반 구축**

- 신도심은 행정도시로 원도심은 문화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 이동 흐름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등 역사문화 관광 서비스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천년의 매력을 간직한 홍주 원도심이 정비되는 단계에서 공동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프로모션과 관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생협력체계 구축**

- 혁신도시 지구가 지정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유치되면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구가 구성됨.

- 이에 따라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 협의체, 혁신도시 사회적 경제조직 등 구성·운영, 상생발전기금 조성이 의무화됨.
- 또한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 확대로 홍성이 포함되어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동반성장 기반이 확보됨.
- 따라서 혁신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제 강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전략산업 육성 등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2 지정토론(4인)

① 이경진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주민과 행정의 협업 강화

-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주민들이 모여 강력한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정과 협력해야 함.
- 또한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협력 네트워크' 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운영조직' 으로 주축이 되어야 함.

❍ 원도심 정책지원 확대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적극적이고 실행력 있는 제도적인 방안과 재원 방안이 있어야 함.

② 최인호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관광 협력 사업 추진

- K-POP을 활용한 한류 관계인구 확장과 관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연계형 테마관광 사업 전개

- 내포문화 연계 테마관광 사업 추진 :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

자원 및 역사적 사건 등에 기반한 브랜드를 만들고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전개해야 함.

- 관방유적 네트워크 사업 : 스코틀랜드 성곽협회, 일본 성곽협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내포문화권 관방문화 자원의 세계화를 도모해야 함.
- 근대 한국불교 성지 네트워크사업 : 내포지역은 근대 한국불교가 일어난 곳인 만큼 이를 활용해 종교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 **라이프스타일 관광 활성화**

- 홍성 및 내포신도시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음.
- 원도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공공 기억을 찾아 유·무형의 형태로 아카이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홍성을 대표했던 거리 '홍고통' 활성화를 위한 체험 행사, 음식 특화상점과 청년 푸드트럭 등의 유치, 홍성 출신 유명 인물을 활용한 벽화거리 및 버스킹 공간으로 조성하여 방문 매력을 증진해야 함.

③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상생협력 약속**

-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로 묶어진 하나의 지역이므로 두 지역 간 상생협력 시 국가사업 및 국비 확보, 지역사업 확보 등이 수월함.
- 증가한 지방세수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원도심 발전기금 조성**

-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현실임.
- 이에 원도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원도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시행할 기금사업을 두 지자체 간 협의로 정하거나, 기금을 균등 배분하여 양 지자체가 스스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도록 제안함.

④ 신영식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재무국장)

❍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과거로의 여행**

-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생 등 인물들의 생가지체험과 홍주읍성, 의사총 천주교 순례지 등 비극적 역사장소, 재난과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현장을 돌아보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다크투어리즘을 제안함.

❍ **내포문화숲길 등 현재로의 여행**

- 국가 숲길로 지정받은 내포문화숲길과 홍성군의 유일한 유인도 죽도 둘레길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제안함.

❍ **오감 만족 여행으로 미래로의 여행**

- 홍성군이 추진 중인 "홍성 복합디지털 스페이스 조성"과 연계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디지털 실감 영상 및 AR·VR, 메타버스 콘텐츠관에서의 가상현실을 체험하며, K팝 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공연 및 전국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홍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음.

3 집행부 의견

[육안수 충청남도 혁신도시정책과]

❍ 충남도는 혁신도시에 따른 홍성과 예산의 상생을 위한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중에 있음.

❍ 또한 내년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자전거 도로망 확충을 위한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여 구도심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임.

❍ 올해 12월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통되어 원도심과 신도심의 시간적 단축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원도심과 신도심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도 노력할 것임.

4 자유토론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 원도심은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도립미술관' 과 '예술의 전당' 이 건립되면 신도심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하여 함께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빈집을 예술이 집적되는 공간, 예술의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실제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청년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 중앙정부의 사업을 공모하거나 도와 시군의 지원을 통해 원도심에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신한류 콘텐츠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 이처럼 내포문화권의 예술진흥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제안함.

5 마무리 말씀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의원]

❍ 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스며있는 홍성군의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신도심과 공동 발전해야 충남 서해안의 중심지, 행정의 요충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임.

❍ 도의회에서도 홍성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해결되고 신도심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 높이겠음.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1. 원도심과 신도심의 정주 환경 격차 해소
2. 원도심의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 연계 교통망 확충
4. 문화・관광 협력기반 구축
5. 신도심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결 과〉

1. 주민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원도심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
2. 원도심의 역사・문화・예술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3.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원도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Ⅳ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홍성군청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밑그림'완성'

전라북도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내년부터 전북서 운영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밑그림 '완성'

- 市 집행부와 교류·협력 강화 및 의회 의정활동 역량 제고에 초점
-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정책지원관 도입 등 분야별 시행계획 마련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점에 구체적인 자체 인사 운영방안을 확정하고,「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등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개정 '20. 12. 9., 시행 '22. 1. 13.)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의회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사권 독립 실무전담팀(T/F)' 을 설치하고 추진단 회의(3회),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2회) 및 간담회(6회), 외부 용역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분야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계획에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의회 조직' 개편,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수립,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관' 도입 등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조직개편(1담당관·3팀 신설)을 통해 의회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또, 市 집행부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의회↔市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직원 다면평가 신설, 평정 반영기간 확대(계급별 1년씩), 가산점 체계 정비 등 의회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으로 조직 활력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면서, 의회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후생 복지 시스템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지원관(총 15명, '22년 7, '23년 8)'은 의원 밀접 지원에 적합한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며, "내년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시 자치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달 중으로 市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의회 전출·입자를 공모·확정할 예정이며, 청사 재배치,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29건) 등 사전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22. 1. 13.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권 독립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내년부터 전북서 운영

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관련 예산 확보
지방의원 등 1만여명 대상 교육…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송지용 의장 “지방의회 노력 결실…전문성 향상 기대”

내년부터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기구 구성 등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내년 예산에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600만원을 수립했다.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양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은 3760여명에 달하며, 사무처 직원은 5500여명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추진TF단장을 맡아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에 앞장서 온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그동안 전국의 광역·기초의회가 한 목소리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요구해 왔는데 결실을 거두게 돼 기쁘다” 며, “지방의회 연수를 전담할 기구가 마련되는 만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을 높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어 “특히 2022년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는데다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해여서 교육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회 전문 교육기관으로 가동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전라북도의회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공론화에 앞장섰다.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잇따라 방문해 지방의회 전담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 전북도의회 제안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TF를 조직해 정부와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교육 전문성 확보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해왔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7호, 2021. 12.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 ·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채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63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의 세부사항,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포함 사항(제3조의5제2항 신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사항을 산지전용허가 · 신고에 관한 사항,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에 관한 사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여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나. 토석채취허가 시 토석 반입기준의 적용 예외(제37조제3항제5호 · 제6호 신설)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도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예외를 설정하여 재난 등 다양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설치조건 신설(별표 3 제4호아목 · 자목 신설)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에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을 추가하고,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별표 8의3 제2호라목3) 신설]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횟수별로 1차 위반 시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6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신고한 기간 동안의 채석 중지 처분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8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정목적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의 범위를 차세대 공정기술 관련 업종으로 확대하고, 뿌리기업 확인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2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과 그 취소의 절차·방법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뿌리산업: 나무의 뿌리처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는 업종 또는 그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하며, 크게 주조(鑄造), 용접(鎔接)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기반 공정산업과 사출(射出)·프레스,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산업으로 구분됨.

주요내용

가.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절차(제17조의2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하고,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뿌리기업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제23조의2 및 제23조의4 신설)

우수한 근로·복지환경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뿌리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 확대(별표 1 및 별표 2)

뿌리기술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을 추가하고, 그 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뿌리산업에 추가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함.

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취소의 기준(별표 3)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취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1-12호 06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질의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제8조 관련질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의견21-0353, 2021. 12. 8. 강원도 강릉시]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제5조, 제7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제26조의2)하고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이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조례의 개폐 청구권자에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인정(제1항)하고 있으며, 주민 총수 계산시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

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해 산정(제10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이라 한다) 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재한외국인"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제3조)하고 있으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를 위한 노력(제10조)과 사회적응 지원(제11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고,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외국인처우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재한외국인의 범주에 포함되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처우법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고용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릉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강릉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의 주된 목적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지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근로자이긴 하지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목적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나 관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강릉시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제1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제2호), 외국인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제5호)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고용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원할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 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을 규정하여 지원센터의 업무와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8조 관련)

[의견21-0319, 2021. 12. 14., 경상남도 남해군]

【질의요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정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5조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각주: 헌법재판소 1998. 3. 26.자 97헌마194)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법령에서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위 자유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따른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개별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교통안전법」 제6조에 따르면 교통수단운영자(각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가목))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각주: 교통수단이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수단에 포함됨(「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가목))의 안전한 운행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수단운영자 스스로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각주: 교통안전법령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운영자로 하여금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전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교통안전법령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는 교통수단운영자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음),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일정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안전모 착용 의무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하 “남해군조례안”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안전모 비치(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제3호),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제4호)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의 하나로 안전모를 갖추어 놓아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직업 수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한 남해군조례안 제8조의 내용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7. 12. 8. 의견제시 17-0305; 법제처 2015. 6. 5. 의견제시 15-0118 참조)을 고려하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충남-전북간 불합리한 해상경계 개선 거듭 촉구

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전북 군산시와 서해 앞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 어민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행정편의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어청도, 개야도, 연도, 죽도가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현재의 해상경계는 한시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조업해역이 협소한데다 새만금 개발과 북측도류제 건설 등으로 바다환경이 변하면서 서천 어업인들은 더 먼바다로 돌아가 조업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감소를 참고 지내왔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도 어민이 조업 도중 부지불식간에 해상경계를 넘어 전북해역에 들어갈 경우 해상경계 해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충남도, 서천군과 해상도계 조정 논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게끔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분쟁 당사자간 합의 도출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전북-충남간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실정법을 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천과 군산 어민들의 해묵은 갈등 해소와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종전부터 관습적으로 조업이 이뤄졌던 수역은 자치단체간 협의 없이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북도와 군산시 등 주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 12. 20.일 보도자료-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21년 12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 락 처 : (041) 635-5124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